

제 출 문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육아돌봄으로 인한 여성경력단절 해소 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2. 11.

리더스클럽
손수조 (인)

참여연구진 및 용역수행기관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시 돌봄정책 연구회」 대표 육정미

제안의원 김태우 의원

참여의원

권기훈, 김재용, 김재우, 류중우, 박종필

이재숙, 전경원, 정일균, 하중환, 허시영

□ 용역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참여연구원 신동현 (리더스클럽 연구원)

정진아 (리더스클럽 연구보조원)

요 약 문

I. 제 목

“육아돌봄으로 인한 여성경력단절 해소 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대구광역시의 여성들이 육아돌봄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의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진행되었음

III. 연구 내용 및 범위

저출생 현상으로 인구위기에 놓인 한국 사회에서 육아돌봄에 의해 대구광역시 여성들이 겪고 있는 경력단절 문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고, 정책적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했음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경력단절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육아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음

IV. 연구결과

정부의 '제3차 여성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의거한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확인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추진하고 있는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했으며,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사업 집행의 근거가 되는 11개 조례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했음

대구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해보고자 '2023 대구 여성 행복 일자리 박람회·토론회'에 참여하고,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대구광역시 시민의 의견을 확인했음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로서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 운영, 세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부산시 관내 도서관을 활용한 야간 돌봄서비스,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경상북도 여성리더 발굴의 5개 정책 내용을 검토했고, 해외의 우수 정책 사례로서 일본, 프랑스, 독일의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을 조사했음

V.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해 각종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에서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함

각종 수당 지원 등 정책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확대하거나, 영아종일제·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시 정부 적용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대구광역시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검토해볼 수 있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자영업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통과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만큼, 대구광역시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기간급여 지급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아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사례가 될 수 있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이므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성리더 육성과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요구됨

안전한 보육시설 확충과 부모의 육아돌봄 편의성 증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내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야간 돌봄을 활성화한다면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2
II. 여성경력단절 현황	4
1. 국내 인구 동향	4
2. 국내 여성경력단절 현황	10
3. 대구광역시 여성경력단절 현황	17
III.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18
1. 정부 정책 방향	18
2. 대구광역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조례	25
3. 대구광역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43
4. 집단심층면접 분석 및 의견 수렴	53
IV. 우수 정책 사례	57
1.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 사례	57
2. 해외 우수 정책 사례	72
V. 결론	80
1.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	80
2. 사회 의식 변화 필요성	89
참고문헌	91

표 목차

<표 2.1> 기혼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2010년, 2015년, 2020년)	9
<표 2.2> 고용률 현황	10
<표 2.3>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현황	13
<표 2.4> 2022년 여성경력단절 현황	14
<표 2.5> 여성경력단절 규모 및 사유	14
<표 2.6> 맞벌이 가구 현황	16
<표 2.7> 지역별 여성경력단절 현황	17
<표 3.1> 돌봄경제의 7대 영역	22
<표 3.2> 제3차 여성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추진과제	23
<표 3.3> 대구광역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주요 조례	26
<표 3.4>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30
<표 3.5>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32
<표 3.6>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여성경력단절 관련 내용	35
<표 3.7>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여성경력단절 관련 내용	36
<표 3.8>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37
<표 3.9>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38
<표 3.10>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39
<표 3.1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41
<표 3.12> 2023년 대구광역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세부과제	48
<표 3.13> 2023년 대구광역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선정 현황(2023년 9월)	51
<표 4.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60
<표 4.2>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64
<표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양육지원금 관련 내용	72
<표 5.1>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	80
<표 5.2> 대구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85
<표 5.3> 대구광역시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8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3
<그림 2.1> 한국과 세계 인구 비교	4
<그림 2.2> 한국과 세계 인구구조 비교	5
<그림 2.3> 한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6
<그림 2.4> OECD 회원국별 총부양비 비교 (2020년, 2070년)	7
<그림 2.5> 15세~64세 고용률 추이	11
<그림 2.6> 15세 이상 고용률 추이	11
<그림 2.7>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12
<그림 2.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국제 비교	13
<그림 2.9> 여성의 고용 현황 구성	15
<그림 3.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요 사업	24
<그림 3.2> 대구아동돌봄 포털 사이트	43
<그림 3.3> 2023 대구 여성 행복 일자리 박람회·토론회 참여	53
<그림 3.4> 집단심층면접 분석 및 의견 수렴	54
<그림 4.1>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계획 (4대 분야, 28개 사업)	58
<그림 4.2>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 운영	59
<그림 4.3> 인천 계양구 임신·출산·육아 정보포털 ‘아이조아계양’ 운영	59
<그림 4.4>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63
<그림 4.5> 부산시교육청 야간 돌봄서비스 홍보 내용	67
<그림 4.6>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위라벨링크’ 운영	68
<그림 4.7> 경북개발공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69
<그림 4.8> 광역새일센터(전남·경북 등) 간 우수사례 공유	70
<그림 4.9> 2022년 전남광역새일센터 우수사례(최우수상)	71
<그림 5.1>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돌봄 지원 정책(1순위)	81
<그림 5.2> 육아돌봄 등 개별 요소 간 상호 작용	89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의 여성들이 육아돌봄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의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진행되었음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포함해 2023년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의 ‘N포 세대’라 불리며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난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이라 불릴 정도의 상황이 지속되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재평가가 요구됨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2012년 48만 5천명과 비교해 23만여 명이 줄어들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음
- 대구광역시 출생률만 하더라도 2022년 기준 0.76명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육아돌봄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기존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존재함
-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나타났으며, 여성경력단절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그간 대구광역시뿐 아니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여성경력단절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음
- 이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하고, 여성경력단절 문제에서 주요한 의제 중 하나인 육아돌봄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함
- 결론적으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을 검토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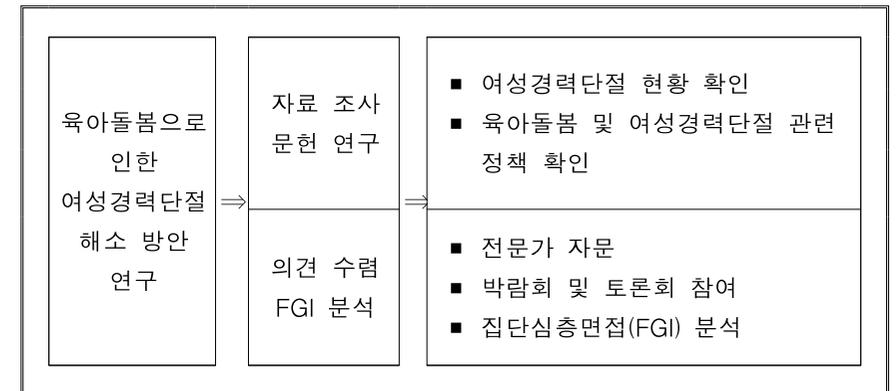
2.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 내용은 저출생 현상으로 인구위기에 놓인 한국 사회에서 육아돌봄에 의해 대구광역시 여성이 겪고 있는 경력단절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책적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했음
-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함
- 여성경력단절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육아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음
- 연구 범위는 핵심 주제가 육아돌봄 및 일자리와 연계되는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인 만큼 대구광역시 여성의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 촉진 방안과도 연계하고자 함
- 연구 대상이 육아돌봄에 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이므로 2023년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 과거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조례 제정과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연구 방법은 대구광역시를 포함하는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현황 확인과 자료 조사,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연구를 했음
- 자료 조사와 문헌 연구에서는 한국의 인구구조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계자료와 정책 발간자료를 종합 분석했으며, 대구광역시 여성경력단절 현황 및 특징 등에 대해 연구했음
- 대구광역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우수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 해결 방향성을 제시함
- 2023 대구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 및 여성행복 토론회 참여, 전문가 자문, 집단심층면접(FGI) 분석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질적 연구를 진행했음
- 이러한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절차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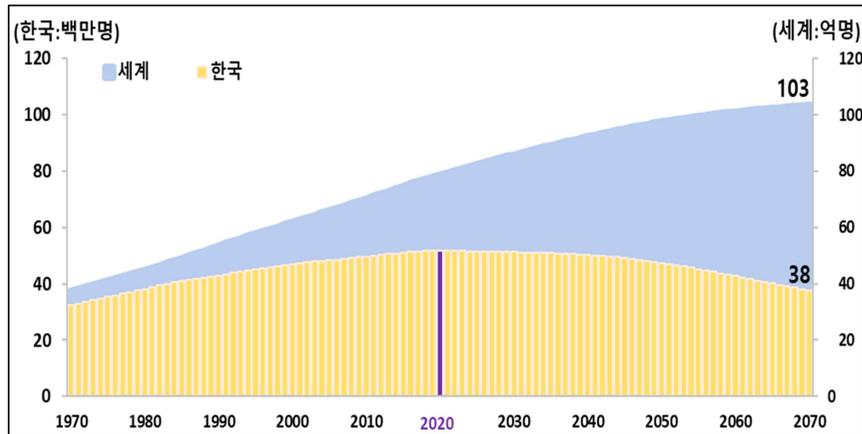


II. 여성경력단절 현황

1. 국내 인구 동향

- 한국의 인구는 2023년 11월 기준 약 5,155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29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에 속하지만,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40년에는 4,000만 명,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가 예상됨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해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더욱 급속한 인구 변화가 예상됨
- 세계 인구가 2037년에는 90억 명을 넘어서고, 2058년에는 100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상이한 추세이기에 인구위기가 현실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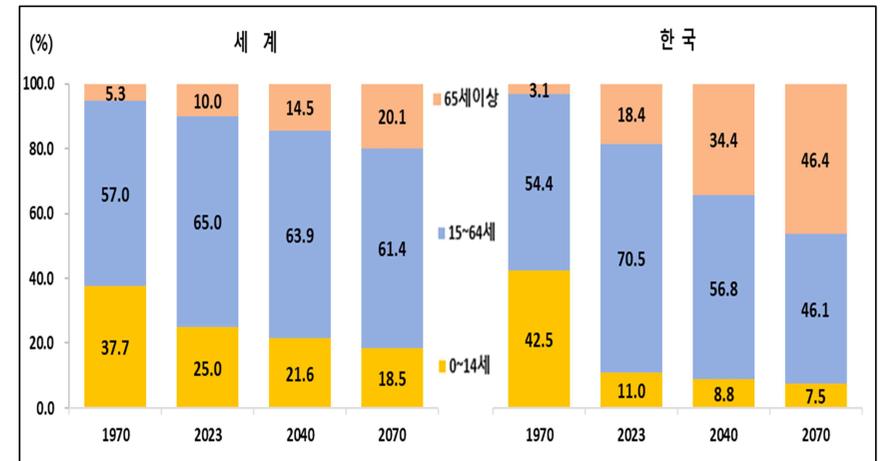
<그림 2.1> 한국과 세계 인구 비교



- 출처 : 통계청(2023)

- 통계청과 유엔(UN)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구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에서 15~64세에 이르는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2023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이고, 2040년에는 56.8%, 2070년에는 46.1%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동 기간에 고령인구 비중은 2040년 34.4%에서 2070년에는 46.4%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 인구 현황과 비교하더라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 한국과 세계 인구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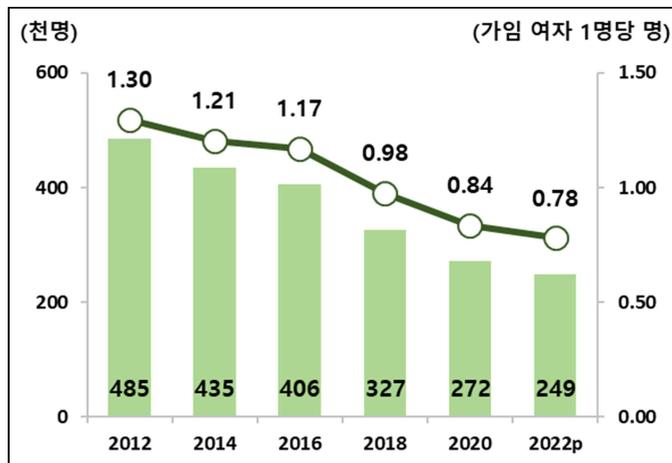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출생아 수가 있음
- 2022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2012년 48만 5천명에 비해 23만여 명이 줄어들어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임

- 합계출산율은 2018년을 기점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2년에는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냈음
- 2021년 기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인구소멸 국가인 점을 부인할 수 없음

<그림 2.3> 한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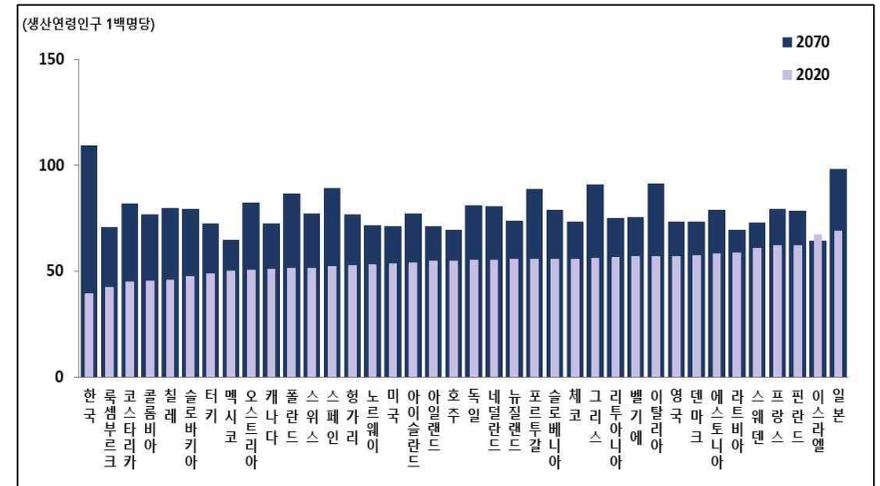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2023)

-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로 OECD 회원국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70년에는 46.1%로 가장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감소해 2020년의 46.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에 연평균 36만명 감소하며, 2030년대에는 53만명 가량 감소하는 추세일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총부양비 증가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인당 소득을 낮추고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경제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음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6년에 100명, 2070년에는 117명 수준에 이르러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로 OECD 회원국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70년에는 46.4%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경제 소비 요인을 증가시키지만 저축 등이 감소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임
- 생산인구의 부가가치가 고령인구에 집중되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음

<그림 2.4> OECD 회원국별 총부양비 비교 (2020년, 2070년)



- 출처 :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UN(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 한국에서는 출산이 대부분 결혼 이후 이루어지는 경향을 감안할 때 저출생 현상은 비혼 증가, 유배우 출산율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침
 - 기혼 가정의 출산율이 하락했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갖는 연령대가 높아졌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더욱 높아졌음
-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과 육아돌봄에 의한 경제적 부담은 저출생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적 사회 의식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경쟁화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용 등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지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저출생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급격한 인구감소는 인구 균형 상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 시스템 축소, 더 나아가 국가 체제의 존속 위기를 야기함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저출생 현상이 심화된 원인으로는 가족 형성 과정이 지연되는 추세가 고착화된 것이 크게 작용했으며, 특히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며 만혼과 비혼이 증가했음
 - 30대 미혼 비중만 하더라도 1990년에는 남성 9.5%, 여성 4.1%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남성 50.8%, 여성 33.6%에 달하는 결과를 나타냈음
 - 초혼 연령도 1991년에는 남성 27.9세, 여성 24.8세였으나 2021년에는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급격히 증가했음

-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2000년 27.7세, 2010년 30.1세, 2021년 32.6세로 계속 증가했음
- 30~34세 기혼여성의 유자녀 비율도 2010년에는 88.9%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77.1%, 2020년에는 69.4%로 점점 낮아지면서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 기혼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2010년, 2015년, 2020년)
(단위 : %)

구분	기혼 여성의 출산율		
	2010년	2015년	2020년
15~19세	43.5	40.4	30.5
20~24세	68.1	61.0	57.0
25~29세	73.6	59.3	52.5
30~34세	88.9	77.1	69.4
35~39세	95.9	90.2	85.9
40~44세	97.5	94.1	91.3
45~49세	97.8	95.8	93.5
50~54세	98.1	96.7	95.1
55~59세	98.3	96.9	95.2
60~64세	98.6	97.3	94.7
65~69세	98.5	97.6	94.6
70~74세	98.5	97.6	95.0
75~79세	98.5	97.6	95.2
80~84세	98.5	97.4	95.9
85세 이상	98.5	97.2	96.6
전체	96.0	93.5	91.6

- 각 연령집단별 기혼여성 중 출산 여성의 비중
- 출처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통계청(2015, 2020),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2. 국내 여성경력단절 현황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요구가 증대되면서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요구가 확대됨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양성하고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
- 2022년 기준 15~64세의 여성 고용률은 60.0%로, 2010년의 52.7%와 비교하여 7.3% 상승하여 처음으로 60%대에 도달했음
- 특히 30~34세 여성 고용률은 68.5%로, 2010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여성이 52.9%로, 2010년 대비 5% 상승함

<표 2.2> 고용률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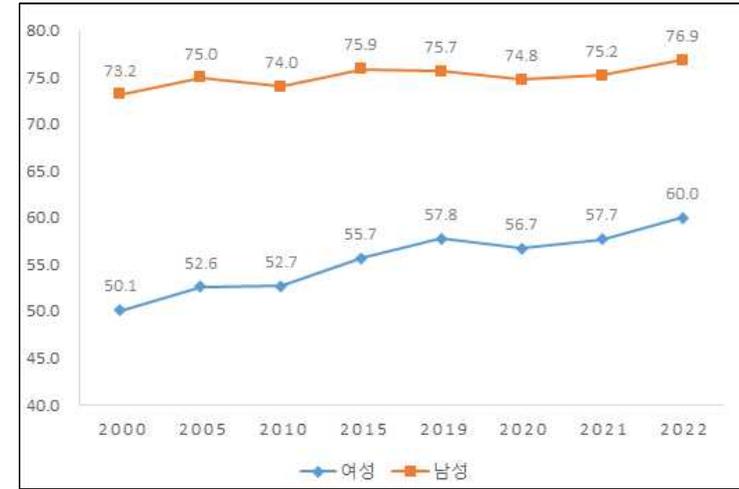
	15세 이상 고용률 ¹⁾				15~64세 고용률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2000	58.5	47.0	70.8	23.8	61.5	50.1	73.2	23.1
2005	59.9	48.6	71.9	23.3	63.7	52.6	75.0	22.4
2010	58.9	47.9	70.3	22.4	63.4	52.7	74.0	21.3
2015	60.5	50.1	71.4	21.3	65.9	55.7	75.9	20.2
2019	60.9	51.6	70.7	19.1	66.8	57.8	75.7	17.9
2020	60.1	50.7	69.8	19.1	65.9	56.7	74.8	18.1
2021	60.5	51.2	70.0	18.8	66.5	57.7	75.2	17.5
2022	62.1	52.9	71.5	18.6	68.5	60.0	76.9	16.9
'00년 대비	3.6	5.9	0.7	-5.2	7.0	9.9	3.7	-6.2
'21년 대비	1.6	1.7	1.5	-0.2	2.0	2.3	1.7	-0.6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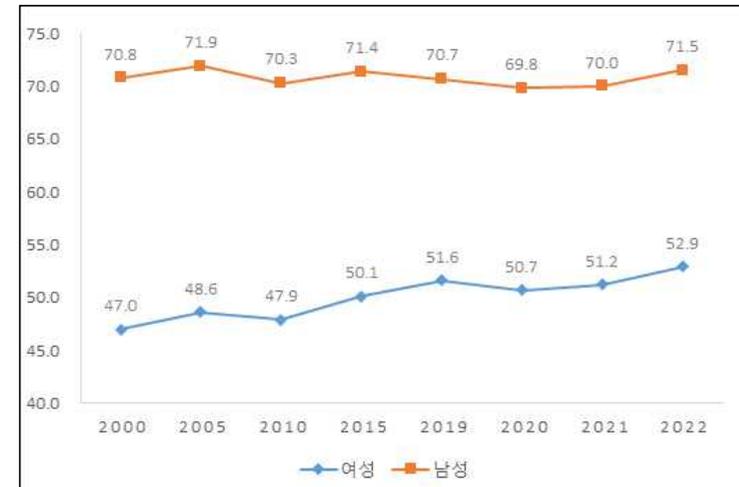
<그림 2.5> 15세~64세 고용률 추이

(단위 : %)



<그림 2.6> 15세 이상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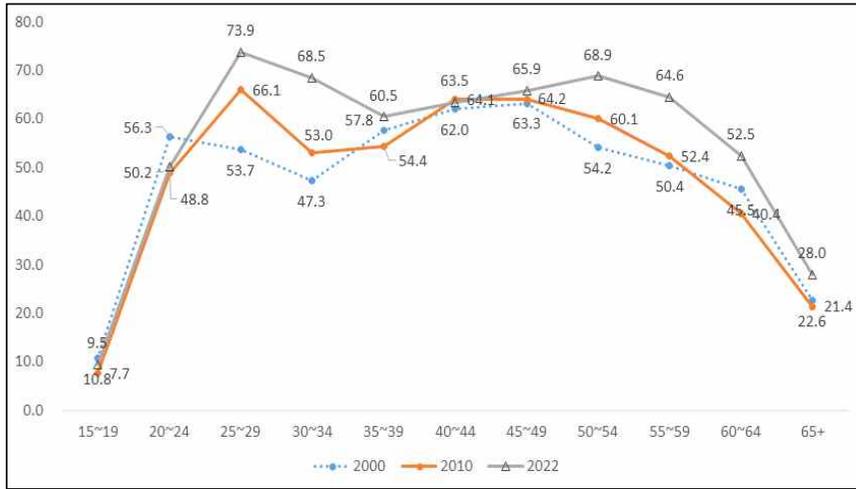
(단위 :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에 73.9%, 50대 초반에 68.9%, 30대 초반에 68.5% 순으로 높은 반면, 30대 후반에 60.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여성의 고용률은 경력단절 등에 의해 30대에 감소하고,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증가하게 되는 M자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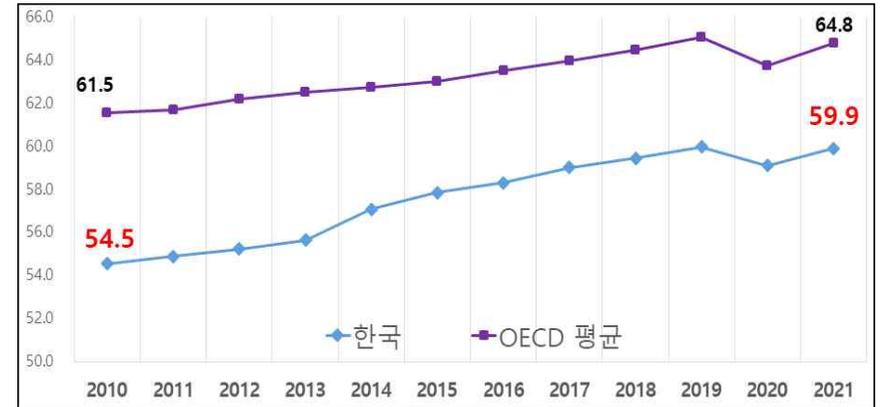
<그림 2.7>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 추세에 있으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임
- 2021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9%에 그쳐 OECD 회원국(38개국 평균 64.8%) 중에서 31위에 불과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음
- 2022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차이는 18.9%로, 2010년과 비교하여 4.7% 감소했으며, 여성 실업률은 3.1%로, 2010년의 3.3%와 비교하여 0.2% 감소했음

<그림 2.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국제 비교



- 출처 : OECD 회원국 통계

<표 2.3>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현황

(단위 : %)

	경제활동참가율 ¹⁾				실업률 ²⁾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여)
2000	61.2	48.8	74.4	25.6	4.4	3.6	5.0	1.4
2005	62.2	50.3	74.8	24.5	3.7	3.4	4.0	0.6
2010	61.1	49.6	73.2	23.6	3.7	3.3	4.0	0.7
2015	62.8	51.9	74.1	22.2	3.6	3.5	3.6	0.1
2019	63.3	53.5	73.5	20.0	3.8	3.6	3.9	0.3
2020	62.5	52.8	72.6	19.8	4.0	4.0	3.9	-0.1
2021	62.8	53.3	72.6	19.3	3.7	3.8	3.6	-0.2
2022	63.9	54.6	73.5	18.9	2.9	3.1	2.7	-0.4
'00년 대비	2.7	5.8	-0.9	-6.7	-1.5	-0.5	-2.3	-1.8
'21년 대비	1.1	1.3	0.9	-0.4	-0.8	-0.7	-0.9	-0.2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여성경력단절은 2022년에 약 139만 7천명으로, 2015년과 비교하여 약 67만 6천명이 감소했음

○ 2022년 여성경력단절은 139만 7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경력단절 비율은 17.2%로 2015년의 21.7%와 비교하여 4.5% 감소함

□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 42.8%, 결혼 26.3%, 임신·출산 22.7%, 가족돌봄 4.6%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2.4> 2022년 여성경력단절 현황

(단위 : 천 명, %)

	기혼여성 (A)	비취업 여성(B)	경력단절 여성(C)		
			비율 (B/A)	비율 (C/A)	비율 (C/B)
전체	8,103	3,027	37.4	1,397	46.1

<표 2.5> 여성경력단절 규모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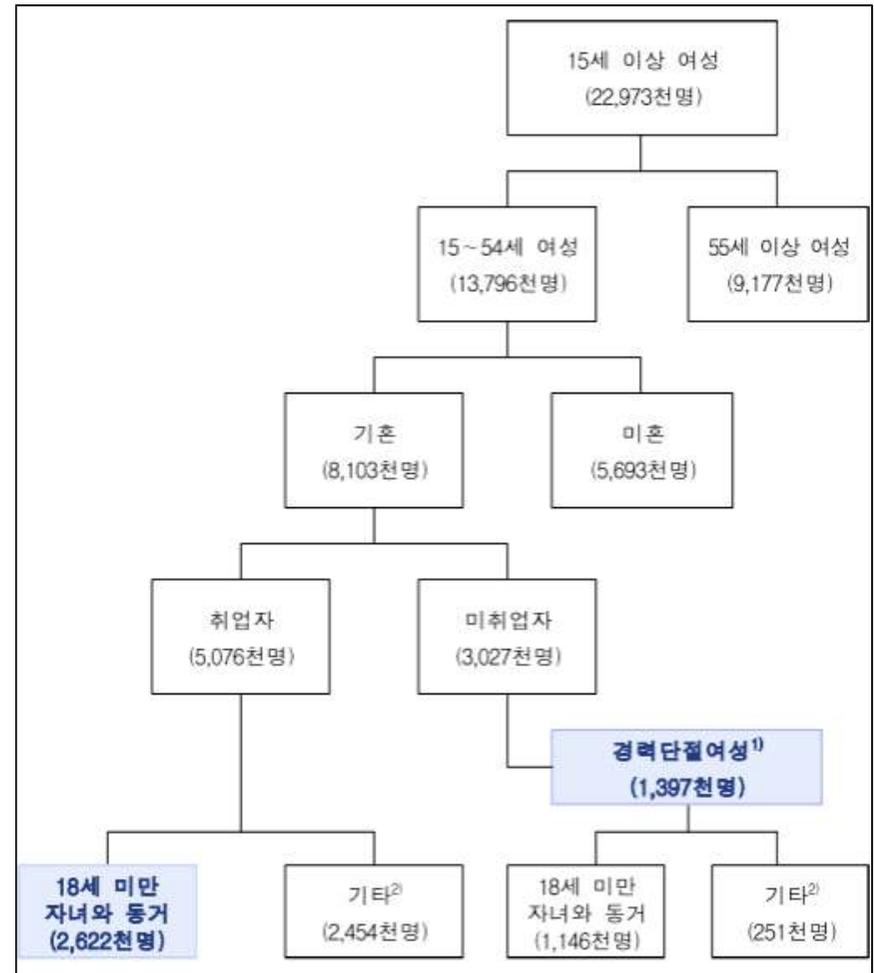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15~54세 기혼여성 (A)	비취업 여성 (B)	B/A	사유별 여성경력단절(C)											
				전체	C/A	결혼	비율	임신 출산	비율	육아	비율	자녀 교육	비율	가족 돌봄	비율
2015	9,561	3,863	40.4	2,073	21.7	767	37.0	505	24.3	618	29.8	82	3.9	103	5.0
2018	9,005	3,457	38.4	1,847	20.5	634	34.4	445	24.1	619	33.5	71	3.8	78	4.2
2019	8,844	3,366	38.1	1,699	19.2	522	30.7	384	22.6	649	38.2	69	4.1	75	4.4
2020	8,578	3,420	39.9	1,506	17.6	414	27.5	321	21.3	640	42.5	62	4.1	69	4.6
2021	8,323	3,240	38.9	1,448	17.4	396	27.4	320	22.1	626	43.2	55	3.8	50	3.4
2022	8,103	3,027	37.4	1,397	17.2	368	26.3	318	22.7	597	42.8	50	3.6	64	4.6
'15년 대비	-1,458	-836	-3.0	-676	-4.5	-399	-10.7	-187	-1.6	-21	13.0	-32	-0.3	-39	-0.4
'21년 대비	-220	-213	-1.5	-51	-0.2	-28	-1.1	-2	0.6	-29	-0.4	-5	-0.2	14	1.2

-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주 : 각 년도 전체 여성경력단절 수 대비 해당 사유 여성경력단절 비율 (4월 기준)

<그림 2.9> 여성의 고용 현황 구성



-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주 : 1) 개인가족적 사유 포함

2) ① 18세 미만 자녀와 비동거 ② 자녀 18세 이상 ③ 자녀 없는 경우

□ 2022년 기준 맞벌이 가구 수는 584만 6천 가구로, 유배우 가구 중 46.1%를 나타내는 만큼 과거와 비교해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6> 맞벌이 가구 현황

(단위 : 천 가구, %)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5	유배우가구	12,143	201	2,131	3,294	3,314	3,205
	맞벌이가구 ¹⁾	5,370	73	927	1,683	1,701	986
	비율 ²⁾	44.2	36.6	43.5	51.1	51.3	30.8
2016	유배우가구	12,214	188	2,057	3,226	3,354	3,391
	맞벌이가구 ¹⁾	5,535	72	932	1,698	1,788	1,046
	비율 ²⁾	45.3	38.2	45.3	52.6	53.3	30.8
2017	유배우가구	12,289	179	1,982	3,157	3,370	3,601
	맞벌이가구 ¹⁾	5,446	65	932	1,642	1,767	1,041
	비율 ¹⁾	44.3	36.3	47.0	52.0	52.4	28.9
2018	유배우가구	12,368	174	1,909	3,077	3,389	3,819
	맞벌이가구 ¹⁾	5,684	66	945	1,668	1,851	1,154
	비율 ²⁾	46.0	37.9	49.5	54.2	54.6	30.2
2019	유배우가구	12,472	172	1,831	3,011	3,401	4,058
	맞벌이가구 ¹⁾	5,680	66	917	1,634	1,835	1,229
	비율 ²⁾	45.5	38.6	50.1	54.3	53.9	30.3
2020	유배우가구	12,609	172	1,762	2,972	3,391	4,311
	맞벌이가구 ¹⁾	5,675	65	907	1,586	1,811	1,306
	비율 ²⁾	45.0	37.9	51.5	53.3	53.4	30.3
2021	유배우가구	12,687	170	1,696	2,930	3,364	4,528
	맞벌이가구 ¹⁾	5,826	73	906	1,605	1,857	1,386
	비율 ²⁾	45.9	42.8	53.4	54.8	55.2	30.6
2022	유배우가구	12,691	157	1,604	2,879	3,339	4,712
	맞벌이가구 ¹⁾	5,846	79	870	1,588	1,844	1,466
	비율 ²⁾	46.1	50.1	54.2	55.2	55.2	31.1

-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주 : 1) 맞벌이 가구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2)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 가구) × 100

3. 대구광역시 여성경력단절 현황

□ 대구광역시의 여성경력단절은 2022년 기준 약 6만 9천명으로, 2021년의 7만 6천명과 비교하여 7,700명 감소했음

○ 여성경력단절 비율은 18.9%이며, 전국 평균인 17.2%다 1.7% 높은 수치임

○ 대구광역시 여성 취업자는 2022년에 53만 6천명으로 고용률 49.9%를 나타냈는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2.7> 지역별 여성경력단절 현황

(단위 : 천 명, %)

	2021년				2022년				
	기혼 여성 (A)	미취업 여성	경력단절 여성 (B)	비율 (B/A)	기혼 여성 (A)	미취업 여성	경력단절 여성 (B)	비율 (B/A)	증감
전체	8,323	3,240	1,448	17.4	8,103	3,027	1,397	17.2	-51
서울	1,430	565	239	16.7	1,368	504	220	16.1	-19
부산	486	184	78	16.1	475	187	80	16.9	2
대구	388	153	77	19.8	366	134	69	18.9	-8
인천	487	185	75	15.5	482	189	81	16.8	6
광주	247	99	45	18.4	247	101	45	18.0	-1
대전	246	90	40	16.1	239	93	47	19.7	8
울산	197	89	37	18.8	190	88	38	20.0	1
세종	72	30	16	21.5	75	29	18	23.9	2
경기	2,366	968	455	19.2	2,322	862	424	18.2	-31
강원	224	76	35	15.4	219	67	33	14.9	-2
충북	257	88	46	17.9	253	92	45	17.6	-1
충남	354	136	66	18.6	343	132	68	19.7	2
전북	264	91	34	13.0	262	82	32	12.0	-3
전남	251	84	38	15.1	245	74	35	14.2	-3
경북	401	167	70	17.4	379	147	59	15.4	-11
경남	544	209	85	15.6	528	213	95	17.9	10
제주	110	27	14	12.6	110	32	11	9.9	-3

-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Ⅲ.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1. 정부 정책 방향

- 정부에서는 ‘제3차 여성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
 - 또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이란 목표 하에 1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대 영역의 13개 중점과제와 102개 세부과제를 구성했음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이 있음
 - 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는 모성보호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대체인력뱅크사업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의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률이 30% 미만이고, 임신·출산을 사유로 무당해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이 모성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음

-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심사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임
 - 가족친화 인증 기업은 2022년에 3,706개사에 달했는데, 2023년에는 4,00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는 광역·거점 새일센터 15개소를 중심으로 대학생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해 상담 및 컨설팅,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것임
-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지속적 지원, 재직여성의 직장 적응과 같은 고용유지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이직 희망 여성에게 컨설팅을 하는 등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나타냄
 - 여성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최신 트렌드 교육과 리더 양성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는 정책도 계획했음
- ‘여성경력단절 재취업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여성 취업 지원 강화, 여성 창업 지원 강화가 있음
 -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는 여성 취업 유망직종을 발굴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로 여성경력단절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지역의 미래 유망직종과 연계된 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지역밀착형 직업교육훈련팀’ 운영을 계획함
 - 여성 취업 지원 강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 등에 대한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 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나타냄
 - 특히 새일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새일센터 직업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산업 R&D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턴십을 연계해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여성경력단절 연구원의 산업현장 진출을 촉진함
 - 여성 창업 지원 강화는 농어촌 지역 등 새일센터에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새일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여성경력단절 예비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을 위한 중점 과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가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은 여성친화적인 우수기업 확산 및 경력단절 예방 정책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진행하는 것임
 -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2023년에 1,706개 업체 대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임
 - 여성 연구인력의 R&D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 스타트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고, 여성기업 및 여성경력단절 채용기업 등의 R&D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음
 -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지속력을 높이고, 경력 증가에 따른 전문성 제고, 단계별 여성 창업 컨설팅과 1:1 멘토링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여성 고용 비율이 높거나 여성 친화적인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여성경력단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존재함
 - 육아돌봄에 의한 돌봄경제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음

-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이 있음
-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500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임
 - 부모의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정부 지원을 확대함
 - 지역 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유아 돌봄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읍면동 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존재함
 - 민간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신규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여성경력단절 정책 추진 체계 정비’의 중점 과제로는 여성경력단절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이 있음
- 여성경력단절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은 새일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새일센터 평가,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을 진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새일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음
 -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시스템을 연계해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
 -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은 새일센터 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지표 및 측정방법 등을 고안하여 사업 수행기관별 평가지표 마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과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한 여성고용정책 협의하는 내용임
 - 이외에 지역별고용조사에 대한 부가항목으로 여성경력단절 현황을 조사하여 여성경력단절의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함

<표 3.1> 돌봄경제의 7대 영역

7대 영역	상위법(목적·근거)
I. 돌봄 제품·서비스 효율화 및 고도화	1. 보조기기 지원센터로 적정기술 보조기기 활용 향상
	2. 복지용구·재가서비스 제도 개선
	3. 고령친화제품 맞춤형 연계 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4. 스마트 헬스케어 건강증진사업 실시
	5. 첨단 돌봄기술 제품 개발, 보급, 상용화
	6. 의료·재활기기(로봇) 개발, 보급, 상용화
II. 돌봄특화 주거 개발·확대	1. 케어안심주택 및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 2. 돌봄특화 스마트홈 개발·고도화 확대
III. 건강한 식생활 지원서비스	1. 고령친화식품 활성화: R&D 지원 및 유통 확대 2. 마을 식당·부역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1. 노인·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2. 퍼스널 모빌리티 전력 전환사업 3. 시·청각 장애인 공공시설 및 교통안내서비스앱 상용화 4. 공공투자사업 민간시설 BF 인증 확산
IV.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이동 편의성 증진	1. 노인·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2. 퍼스널 모빌리티 전력 전환사업 3. 시·청각 장애인 공공시설 및 교통안내서비스앱 상용화 4. 공공투자사업 민간시설 BF 인증 확산
	1. 공공기관 중심의 통합 빅데이터 센터 설치·운영 2. R&D 및 데이터 통합 생산·관리·개방·부가가치 창출 3. 적정기술 적용 보조기기 연구개발(R&D)성과 상용화 4. R&D 성과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및 규제 해소
	1. 돌봄 경제 부문 전문 인력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2. 노인 및 장애인 생활체육·재활운동 및 체육 인력 양성 확대 3. 범부처 협업체계 및 복지부 내 전담 부서·인력 편성
	1. 공유가치 창출형 돌봄서비스의 정책 브랜드화 2. 돌봄 경제 플랫폼 구축·활용 3. 돌봄 경제산업 생태계 구축 4. ODA사업으로 확대, 국외 수출 산업화

- 출처: 유재언 외(2019)

<표 3.2> 제3차 여성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추진과제

영역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30)	1.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8)	1. 모성보호제도 지원 확대(5)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제도 정비(3)		
		1.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3) 2.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기반 확대(4)		
	2.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7)	1. 경력단절예방사업 서비스 확대(4) 2.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3)		
	3.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7)	1. 재직여성 능력개발 지원(6) 2.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2)		
여성경력단절 재취업 강화 (26)	1.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10)	1. 취업 희망자 대상 직업훈련 강화(3) 2. 취약계층 역량개발 기회 확대(3) 3. 구직자 발굴 및 취업의욕 제고(2)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2)		
		2.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11)	1. 유형별 새일센터 모델 개편을 통한 전문화(3) 2. 여성경력단절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2) 3.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2) 4. 기업의 여성 R&D 인력 고용여건 조성(4)	
			3.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5)	1. 새일센터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3) 2.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2)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15)
	2.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4)		1. 근로시간 유연성 강화(3) 2. 창업 초기단계 맞춤형 서비스 강화(4) 3. 창업 후 성장 지원 강화(2) 4. 플랫폼 일자리 관련 여성 역량 강화(2)	
		2.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4)	1. 사회적서비스 바우처 일자리 개선(2) 2. 여성경력단절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18)	1.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12)	1. 맞벌이가구·취업모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4)
		2. 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2)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6)
	2.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6)	1.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3) 2.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3)
여성경력단절 정책 추진 체계 정비 (13)	1. 여성경력단절 지원 전달체계 개선(5)	1. 컨트롤타워로서 중앙·광역 새일센터 기능 강화(2)
		2. 공공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 강화(3)
	2. 제도개선 및 협력 체계 구축(8)	1. 여성경력단절 정기적 연구 및 법제도 개선(5)
		2. 범부처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3)

<그림 3.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요 사업



- 출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 대구광역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조례

- 대구광역시에 추진하고 있는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을 확인하기에 앞서 근거가 되는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했음
-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는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5개 조례를 확인했음
-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는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1개 조례를 확인했음
- 경제정책관에서 담당하는 조례로는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1개 조례를 확인했음
-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는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1개 조례를 확인했음
-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는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1개 조례를 확인했음
- 출산보육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는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2개 조례를 확인했음
-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는 2022년 6월에 「여성경력단절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음
- 법률 개정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직자 및 사업주, 관련 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음

<표 3.3> 대구광역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주요 조례

소관부서	조례명	상위법(목적·근거)
여성가족과 (5)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2.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법」
	4.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5. 아이돌봄 지원 조례	「아이돌봄 지원법」
일자리노동정책과 (1)	6.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경제정책관 (1)	7.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정책과 (1)	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청소년과 (1)	9.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출산보육과 (2)	10. 보육 조례	「영유아보육법」
	1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제4조), 실태조사 시행(제5조), 일자리 창출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 지원사업(제6조), 위탁할 경우 예산지원(제8조) 등

(2)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생활 균형 정착 지원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제6조), 실태조사(제7조), 가족친화마을 환경 조성 및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 지원사업 근거(8조),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제9조·제10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제11조) 등

(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위해 필요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제6조~제8조), 평가서 작성(제9조), 평가책임관 지정(제13),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5조),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제16조) 등

(4)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제5조), 추진실적 평가(제6조), 여성행복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제8조의2), 성별영향평가(제10조), 성인지예산 및 통계(제11조~제13조), 일·가정 양립지원(제16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제18조), 양성평등주간 행사(제24조), 대구여성대상(제26조) 등

(5)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아이돌봄 종합계획 수립·시행(제4조), 구·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제5조), 지원사업 위임·위탁 근거(제6조) 등

(6)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제5조), .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등 사업추진 지원(제6조), 일자리지원시설 설치(제7조), 취업상담 및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 사업(제8조), 일자리영향평가(제11조), 고용친화기업 지정(제15조), 일자리창출 및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기관·단체 위탁 근거(제19조) 등

(7)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 여성기업활동 촉진 계획 수립(제5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6조),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등 지원사항(제7조), 여성기업지원사항 심의(제8조),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제11조) 등

(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 수립(제5조), 실태조사(제6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등 지원사업(제7조), 민간전문가 활용(제8조) 등

(9)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
 -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제5조), 아이돌봄사업 등 사업(제6조), 원클릭 돌봄 신청 서비스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7조), 대구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8조~제10조), 돌봄시설 지도·점검(제14조) 등

(10) 보육 조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보육의 공공성 확보
 - 보육계획 수립·시행(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제5조~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제11조~제17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제18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제19조), 비용 보조 근거(제2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제23조),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제25조) 등

(1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8조), 아이조아카드(제13조), 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16조) 등

□ 대구광역시 조례 중에서 정책 대상을 여성경력단절로 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음

-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적인 일자리창출 및 창업 지원부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와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주요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
-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경력단절 예방 시책 마련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

- 대구광역시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은 조례에 따라 시행된 2023년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
 - 상위법의 기본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여성경력단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표 3.4>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31.]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경력단절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구직 정보 수집·제공 및 구인·구직 발굴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
6. 여성맞춤형 창업지원사업
7.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8.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조례 중에서 여성경력단절의 일자리 부문과 연관되는 것은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도 일부 내용이 연관되어 있음

-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생활 균형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3.5>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10.]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생활 균형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생활 균형”이란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추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가족친화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5. “가족친화기업 등”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족친화마을”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조성을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노동자의 일·생활

-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가족돌봄 및 가족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 사업
2.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3.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민관협력 사업
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사업
2. 일·생활 균형 직장 교육 사업
3. 일·생활 균형 직장 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족친화인증 확산)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하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4.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감면
 5.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일·생활 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생활 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지원
2. 일·생활 균형 시민 교육 및 활동 지원
3.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4.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민관협력체계 구축
5.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
6.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7.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제16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제1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제18조) 등의 내용에 의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표 3.6>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여성경력단절 관련 내용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2. 12. 1.]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건전한 가족문화 운동 전개
4. 위기에 처한 가정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진단·치료와 지원
5. 그 밖에 건강한 가정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육성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서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제12조), 고용 촉진 및 유지(제14조), 고용친화기업 지정(제15조) 등의 내용에 의해 여성친화적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표 3.7>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여성경력단절 관련 내용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시행 2023. 7. 10.]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과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2조(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 시장은 불합리한 근로조건 및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2.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근로자 셔틀버스운영 사업 3. 수유실, 직장어린이집 등 여성친화적 근로시설 4. 장시간 근로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 5. 그 밖에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p>제13조(임금수준의 향상) 시장은 지역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기업의 임금수준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고용 촉진 및 유지) 시장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3. 기피업종, 인력부족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4.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 등 <p>제15조(고용친화기업 지정) 시장은 지역의 고용증진과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인센티브 지원, 산업육성시책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 대구광역시 조례 중에서 여성경력단절의 육아돌봄과 연관되는 것은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것으로, 아이돌봄 종합계획(제4조) 및 지원사업(제5조) 등의 내용에 의해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표 3.8>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시행 2019. 8. 12.]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과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구·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제5조), 돌봄사업 시행(제6조) 등의 내용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표 3.9>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p>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시행 2022. 4. 11.]</p> <p style="text-align: right;">관리책임부서 : 청소년과</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시장은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6조(돌봄 사업) ① 시장과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초등돌봄교실 사업 5.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7.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우리마을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나눔 사업</p> <p>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p> <p>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7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지자체, 학교, 돌봄기관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원클릭 돌봄 신청 서비스 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4.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구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p>③ 시장은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육계획의 수립(제4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제11조) 등의 내용에 의해 아동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표 3.10>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p>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시행 2019. 8. 12.]</p> <p style="text-align: right;">관리책임부서 : 출산보육과</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과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보장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책임) ① 시장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과 더불어 영유아와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수립 6개월 전에 보육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과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위탁·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대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대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센터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초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제16조) 등의 내용에 의해 육아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표 3.1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관리책임부서 : 출산보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초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초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출산장려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 3.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공무원의 우대 시책 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 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7.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8.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3.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 조례 중에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의 고용 환경 개선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임
- ‘대구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고려사항(제6조·제7조) 등에 의해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내에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성인지 정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기업 지원사항(제7조), 차별적 행위 시정(제9조),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제11조) 등의 내용에 의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 여성기업의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제6조), 돌봄 및 가사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제7조) 등의 내용에 의해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 정책 대상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여성경력단절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을 수 있으나, 여성의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음

3. 대구광역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 2023년에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또한 정부의 여성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음
- 육아돌봄과 관련한 세부 정책으로는 아동 대상별로 구분되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대구형 방과후 틈새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존재함
- 종합적인 육아돌봄 서비스 정보 제공 차원에서 대구아동돌봄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3.2> 대구아동돌봄 포털 사이트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영역에서는 아동 돌봄 지원 강화와 성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어린이집 연장보육 등 보육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야간 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220개소 운영하며, 대체교사를 지원 2,271명 지원하고 있음
 - 방과후 돌봄 종합서비스인 ‘방과 후 아카데미’ 를 2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함
 - 한부모가족 자녀(10,300명), 청소년 부모 자녀(50명)의 아동 양육비 지원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입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위탁가정 발굴, 위탁부모교육, 위탁아동 사례관리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추진함
 - 양육보조금, 아동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심리검사 치료비 등 지원
 - 돌봄공백 가구에 긴급 돌봄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제공하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가족돌봄자 상담 지원 등
- ‘공정하고 양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여성고용유지, 직장문화 개선,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및 인식개선,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창업아카데미를 4개과정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음

- 여성경력단절 유망 직종의 고속런·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을 발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직종 직업교육훈련 33개 과정을 진행하고, AI(인공지능) 크라우드워커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리더십 역량 강화 등 교육 과정 2개를 운영 중임
- 공무원 및 공무원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있음
- 그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고용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망 직종 발굴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음
 - 경력단절 없는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해 경력단절 예방 및 사후관리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영역에서는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경력단절 선제적 예방 및 재직여성 능력개발 지원 강화,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한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을 기존 182개사에서 195개사로 확대하고 있음
 - 경력단절 선제적 예방 및 재직여성 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 맞춤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워킹맘·워킹대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13회 추진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기술교육·진로체험을 계획했음
 -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한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를 기존 20.1%에서 25%까지 확대하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음

□ ‘여성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강화’ 영역에서는 새일센터 취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1만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협업을 통한 취업 연계, 여성 직업역량 강화 및 구직 발굴 등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대구 내 5개소의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경력단절 직업교육훈련 33개 과정을 운영하며,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했음

- 여성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여성 인턴 지원 확대,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음

구분	새일센터명	원소속 기관명
남구	대구남부새일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서구	대구달서새일센터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북구	대구새일센터	대구도시관리본부종합복지회관여성회관
수성구	수성새일센터	대구수성 여성클럽
달서구	신달서새일센터	달서가족문화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협업을 통한 취업 연계는 총 451명 지원하기로 함

○ 여성 직업역량 강화 및 구직 발굴 등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2개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취업 지원 굿잡 버스를 20회 운영 계획함

- 여성행복일자리 박람회는 2일간 운영하여 구직 발굴과 취업 연계 등을 지원했음

□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영역에서는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사업 운영, 지역 여성기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판로 촉진 지원,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기초·실전교육 등 단계별 맞춤 과정을 통한 여성창업 아카데미 운영이 있음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 20개소와 창업 사업화 10개소를 지원하고, 여성창업 육성 공간을 지원했음

○ 지역 여성기업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판로촉진 지원을 위해 여성경제인대회를 운영하고, 여성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했음

-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경영혁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음

○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력을 지원함

□ ‘지역사회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공보육 지원 활성화를 통한 보육 공공성 강화, 초등학생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온종일 돌봄 지원 강화, 지역 사회 돌봄 공백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공보육 지원 활성화를 통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7개소를 운영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을 45%까지 늘리고자 했음

○ 온종일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대구형 방과 후 온종일 돌봄을 150개소로 확대 운영해 1,3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 사회 돌봄 공백 예방 지원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했음

- 돌봄 기관간 협력을 통한 ‘대구광역시 돌봄협의체’를 운영하며,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17개소로 확대했음

□ ‘여성경력단절 정책 추진체계 정비’ 영역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 지원, 여성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고용서비스 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 지원을 위해 여성 고용지원 전담인력을 파견했음

○ 여성일자리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안전을 심의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음

<표 3.12> 2023년 대구광역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세부과제

구분	세부사업명	'23년 예산 (백만원)	비고
합계	육아돌봄 관련 총 13건	267,372.1	
1	어린이집 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	13,922	
2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참여인원 확대	1,034	
3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670	
4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6,601	
5	청소년 부모 양육 지원 강화	27,600	
6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국비예산	
7	위탁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2,016	
8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3,671	
9	지역사회 공동체 주도의 공동육아 지원 확대	206,980	
10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4,723	
11	가족돌봄자 대상 휴식·심리·정서적 지원	30.8	
12	가족돌봄자 상담제도 도입	71.5	
13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52.8	
합계	여성경력단절 관련 총 42건	10,991.5	
1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 확대	10	
2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지원 강화	12	
3	가족친화 네트워크 확산 및 홍보 활성화	15	
4	여성 맞춤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199	
5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운영	'22년 종료	
6	경력단절예방 전담기관 운영	109	
7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13.5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170	
9	농업 분야 여성 역량강화 지원	27.2	
10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비예산	
11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비예산	
12	직장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20	

구분	세부사업명	'23년 예산 (백만원)	비고
13	여성경력단절 직업교육훈련 운영	국비예산	
14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	30	
15	찾아가는 취업지원 굿잡 버스 운영	38	
16	여성행복일자리 박람회 운영	56	
17	국민취업지원제도 협업 운영	비예산	
18	새일센터 취업지원 활성화	759.8	
19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192	
20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확대	비예산	
21	여성인턴 지원	258.4	
22	새일센터 창업지원 서비스 운영	비예산	
23	여성창업아카데미 운영	60	
24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130	
25	여성창업 육성공간 지원	6	
26	여성창업 경진대회 개최	30	
27	대구여성경제인대회 지원	50	
28	대구여성벤처기업 성장지원	15	
29	여성기업 판로촉진 지원	'22년 종료	
30	경영혁신세미나 지원	16	
31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1,554	
32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확대	비예산	
33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1,500	
34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비예산	
35	초등학생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034	
36	대구형 방과 후 틈새돌봄 지원	500	
37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3,969	
38	대구광역시 돌봄협의체 구성 운영	2.6	
39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207	
40	고용서비스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비예산	
41	취업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22년 종료	
42	여성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	8	

- 대구에서 육아돌봄으로 인한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존재함
 - 새일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새일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의 지원을 실시함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 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 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새일여성인턴 :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 인턴에게 1인당 예산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업·창업 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에서는 새일센터 신청 기관 현장 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사업 추진 계획서 승인(변경 포함), 사업 운영 총괄·관리, 취업상담사·직업상담사 등 종사자 현황 관리, 새일센터 조직·인사·급여·회계 기타 운영 관리 규정 승인,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의 권한을 가짐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에서는 새일센터 지정 계획 및 사업 지침 수립, 사업 운영 총괄, 새일센터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여성 구인·구직 DB 구축·관리 등의 역할을 함

- 고용센터에서는 새일센터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알선에 대한 보조사업을 관리하며,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관내 취업서비스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함
- 새일센터에서는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사업 추진 상황과 추진 실적(e새일시스템 보고), 사업비 집행 결과·정산 등을 반기별로 보고함
 - 구인·구직 상담, 취·창업 알선 및 연계, 인턴십 지원,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 취업자 및 채용 기업 대상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교육 과정 개발·운영, 구직자 경력 관리 및 구인 업체 발굴, 새일센터 사업 홍보 등을 계획함

<표 3.13> 2023년 대구광역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선정 현황(2023년 9월)

구분	새일센터	훈련과정	훈련시간
1	대구남부	시빅데이터융합 웹개발자과정	984
2	"	한분식 취창업전문가 양성과정	204
3	"	호텔객실관리사양성과정	100
4	"	급식조리실무전문가양성과정	188
5	"	스마트회계사무원 양성과정	260
6	"	보험금융총무사무원 양성과정	216
7	"	느린학습자맞춤형지도사 양성과정	176
8	"	의약품행정사무원 양성과정	132
9	대구달서	e-business 기업전문가 양성과정	360
10	"	ICT융합메이커 기술형 여성창업가 육성과정	300
11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동 창업을 위한 커머스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360
12	"	사회복지사 행정 및 현장실무 재취업과정	240
13	"	보육&요양기관 급식조리사 취업연계 과정	240

구분	새일센터	훈련과정	훈련시간
14	"	맞춤형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240
15	"	경력단절 보육교사 재취업과정	240
16	"	직업상담사 실무경력 개발과정	240
17	대구	쇼핑몰운영 & 마케팅사무원 (포토샵, SNS, 유튜브, 블로거)	240
18	"	카드설계&행정사무실무과정	240
19	"	SNS마케팅 디지털멀티사무원 양성과정	240
20	"	창업을 위한 의류제작 및 소품제작	346
21	"	브런치[푸드&디저트] 실무자 양성과정	200
22	"	중소기업 세무회계 사무원 양성과정	282
23	"	하이패스경리사무 & 홍보콘텐츠지원양성과정	240
24	수성	메타버스 N잡러 창업과정	240
25	"	실무중심 간호조무사 재취업 양성과정	200
26	"	ESG 사회복지사 실무자 양성과정	220
27	"	유튜브 크리에이터 취창업 양성과정	180
28	"	소잉&홈패브릭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정	360
29	"	도배 및 인테리어필름 시공 양성과정	236
30	"	마스터 전산회계사무원 양성과정	292
31	신달서	온라인 스토어 창업실무과정	115
32	"	스마트 실버맞춤돌봄 전문인력 양성과정	103
33	"	한식조리 전문가 양성과정	181
34	"	현장맞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107
35	"	회계·세무 전문사무원 양성과정	201

4. 집단심층면접(FGI) 분석 및 의견 수렴

- 2023년 9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한 ‘대구 여성 행복 일자리 박람회 및 토론회’에 참여하여 취업·창업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 참가하는 기업 관계자 등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 박람회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 여성과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음
 - 특히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의 목표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여성 멘토링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는 여성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 의견을 확인하고, 대구광역시 여성행복위원장 등과 면담을 통해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을 검토했음
 -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토론이 병행되었기에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림 3.3> 2023 대구 여성 행복 일자리 박람회·토론회 참여



- 연구기간 동안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을 주제로 2회의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인하고자 했음
- 박람회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시민(여성 5명)을 대상으로 1차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대구광역시 거주 시민(여성 3명·남성 2명)과 2차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함

<그림 3.4> 집단심층면접(FGI) 분석 및 의견 수렴



- 육아돌봄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육아돌봄 정책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었음
 - 영아·아동수당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영역에서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육아돌봄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첫 아이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출산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요구됨

사회가 변화되면서 직업군도 다양해졌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돌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네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지원과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 윤OO (30대 남성, 결혼, 자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가 됐는데 믿고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멀고 정원이 부족한데 추가로 생겼으면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편이라 늦은 시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이OO (30대 여성, 결혼, 자녀)

지금과 같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할 때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아이가 1명일 때부터 적극적인 육아돌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 김OO (30대 남성, 결혼, 무자녀)

-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육아돌봄의 어려움이 크게 작용했으며, 출산 이후 기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회 전반의 현실과도 연관됐음
- 결혼과 출산, 육아돌봄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기에 일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포함됨
 - 한국 사회의 육아돌봄 현실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관련 정책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인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생긴다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에 원하는 일을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되네요.

- 김OO (20대 여성, 미혼, 무자녀)

일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고 계시는데 종종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아이와 직접 소통하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일을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 최OO (30대 여성, 결혼, 자녀)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경우에 혜택이 크다면 육아휴직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문화도 그렇고 출산과 육아 자체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해준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정책부터 시행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김OO (30대 남성, 결혼, 무자녀)

IV. 우수 정책 사례

1.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 사례

-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상과 예산규모 등의 범위가 큰 경우가 많기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징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함

(1)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 운영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세부 사업의 기준과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육아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9월부터 정부와 서울시 내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육아 사업을 한 곳에 모은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 그간 서울시에 출산·육아 관련 정보는 국가 시스템 ‘복지로’,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서울 보육포털, 서울 우리동네 키움포털 등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사업명을 검색하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종합 플랫폼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맞춤 검색과 각종 사업의 신청·접수·처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음
- 결혼·임신 여부, 근로 기준 등 신청자 현황과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별도로 검색할 수 있고, 관심 사업으로 지정하면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음
-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별도의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격 여부를 확인 가능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음
- ‘몽땅정보 만능키’ 운영 사업은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시작됐음
 -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종합계획으로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고자 했음
 - 인터넷 육아카페와 부모 모임 등 양육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정책 수요 설문조사, 추진단·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이 발굴됐기에 정책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됨

<그림 4.1>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계획 (4대 분야, 28개 사업)



-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그림 4.2>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 운영



- 출처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 유사한 사례로 인천 계양구에서도 육아돌봄 정책을 안내하는 정보포털 ‘아이조아게양’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안내책자인 ‘아이 LOVE 계양’을 발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4.3> 인천 계양구 임신·출산·육아 정보포털 ‘아이조아게양’ 운영



- 출처 : 인천 계양구 ‘아이조아게양’ 홈페이지

<표 4.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4.] 관리책임부서 : 가족다문화담당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3.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4. 다자녀 가족 우대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업 5.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6.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p>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7조(출산·양육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 양육 관련 부모교육 사업 2. 출산, 양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3. 아동과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p>제7조의2(엄마아빠 행복주간) ① 시장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육자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엄마아빠 행복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추진과제와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제8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0조(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자문단 운영)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의 중요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출산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p> <p>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

(2) 세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세종시에서는 2020년에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월 3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1인당 최대 180만원)하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을 활용함
 - 소득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장려금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정책임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책적 목적과 성과를 높게 평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경기도 성남시·여주시·양평군, 인천 남동구·서구·동구, 부산 수영구 등이 운영 중임
 - 2023년 9월부터는 서울시에서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음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높여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함
 -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음
 - 육아휴직 급여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 한국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타 국가에 비해 긴 편에 속하지만 2021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25.6%에 불과함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이며,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65.2%와 비교해 16배 가량 차이가 발생함
 - OECD 회원국 19개 국가의 육아휴직 성비가 3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남녀 육아휴직 편차는 더욱 두드러짐

<그림 4.4>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출처 : 통계청(2023)

- 남성의 육아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가족친화적 인증 기준 개선 활동을 통해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상대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제한적 성과를 고려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포용이 이루어져야 함

<표 4.2>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의 육아돌봄 관련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2. 1. 1.]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과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p>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p>제4조(지원 기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p> <p>② 장려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p> <p>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p> <p>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p>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p>② 시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p> <p>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9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3) 부산시 관내 도서관을 활용한 야간 돌봄서비스

-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관내 도서관을 활용하여 야간·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정책으로 관내 도서관 어린이실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긴급 돌봄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에 따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일 수용인원은 약 15명 정도임
 -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임
-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점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음
 - 도서관 직원이 아닌 보육교사 및 정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채용해 돌봄을 진행하며, 부산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음
 - 시범 운영 후에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타 도서관으로 확대 실시해 야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부산시 내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돌봄 센터를 구상하고 있음
 - 새벽·오전 돌봄반, 오후·저녁 돌봄반, 야간 돌봄반 등으로 나누어 시간제 운영을 계획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아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림 4.5> 부산시교육청 야간 돌봄서비스 홍보 내용

부산교육, 부산의 모든 아이들을 품다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구포돌봄센터」

이용대상 유치원생, 초등 저학년 학생 (1~3학년)	이용시간 월~금요일 18:00~22:00	정원 1일 15명 내외	내용 지역도서관 어린이실 활용 시간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	------------------------	---

장 소
부산광역시교육청구포도서관 고래들의 노래

오시는길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16번다길 43 구포도서관

예약방법
사전 예약(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

문의전화
☎051-330-6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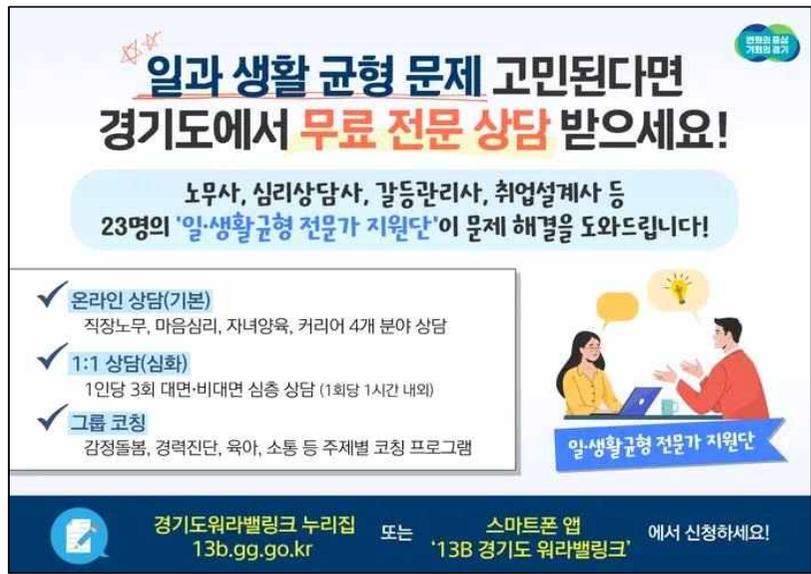
예약 바로가기 찾아오시는 길

- 출처 : 부산시교육청

(4)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구축

- 경기도에서는 가족·건강·여가·관계·직업·재무 등 6대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등록하고, 워라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전문가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무사, 심리상담사, 갈등관리사, 취업설계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음
- 경기도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워라벨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아동 돌봄 기관정보 및 분야별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도 운영하고 있음
-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음

<그림 4.6>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워라벨링크' 운영



- 출처 : 경기도 워라벨링크

(5) 경상북도 여성리더 발굴 사업

- 경상북도에서는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여성리더 육성 사업과 지원위원회 구성, 포상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존재함
- 경북개발공사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고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 경북형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과 공동사업 발굴·추진, 경북 여성 리더 발굴과 상호협력, 경북 발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협조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출산 및 육아돌봄,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북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4.7> 경북개발공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 출처 : 경북개발공사

(6) 전라남도 새일센터 우수사례 공유 활성화

- 전라남도에서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새일센터의 우수사례를 확인하고자 새일센터 종사자와 일자리 담당자 등의 모여 주요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새로운 사례를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전남 지역 새일센터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광역센터와의 연계는 새일센터 기능과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함
- 지역 내 가족센터, 일자리센터, 가족재단 등 공공 부문과 연계한 성과 공유로 사업 담당자들 간 다양한 사례 확인이 가능하며,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가능함

<그림 4.8> 광역새일센터(전남·경북 등) 간 우수사례 공유



- 실제로 2022년 새일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타 새일센터와의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취업자 개인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음
-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여성 취업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인 취업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고, 이후 새일센터의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음
- 가족센터에서 대상자와 유사한 이주여성에게 일자리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는 선순환 역할 가능

<그림 4.9> 2022년 전남광역새일센터 우수사례(최우수상)



최우수상

[여성]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 희망의 발걸음, 힘찬 도약!”

하나자와 가요 (화순군청)

최우수상

코로나 19로 실업자가 되어 새일센터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에 참여, 결혼이민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취업 장벽을 극복, 적성과 부합하는 희망 분야로 취업한 사례이다. 일자리상담사로 취업하여 또 다른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등 새일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민여성들이 자립해나갈수록 희망을 준 우수사례이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첫째 아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2022년 11월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각각 2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첫째 자녀를 낳을 경우 30만 원,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1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했음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후 지급되고 있음
 - 2021년 당시의 통계청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0.626명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강남구는 0.523명으로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24위에 그쳤음
- 관내에서는 셋째와 넷째 자녀 이상을 낳는 가정이 많지 않아 출산양육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고자 첫째,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을 증가했음
 - 2022년부터 출생한 자녀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포함하면 강남구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 초기에 총 4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 혜택이 제공됨
 - 2023년부터 0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포함하면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표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양육지원금 관련 내용

<p>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7.]</p> <p style="text-align: right;">관리책임부서 : 보육지원과</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p>

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출산 장려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대상 아이”란 제4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아이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지원 대상 아이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200만원
 2. 둘째 자녀 200만원
 3. 셋째 자녀 3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 ②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 제909조 및 제909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 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대상 아이가 신청일 현재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전일 경우에는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⑥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2. 해외 우수 정책 사례

- 해외 국가의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의 종합적인 현황을 확인하고, 특징적인 정책을 확인해보고자 함

(1) 일본의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 일본은 2023년 6월에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을 발표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계획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 3대 핵심 정책은 수당 지원 등 경제적 지원 강화, 아이돌봄 등 육아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근로 방식 개혁임
 -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79만 9천명, 합계출산율은 1.27명으로, 인구 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일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아동가정청 예산을 4조8,885억 엔(약 44조원)으로 책정했으며, 저출산 대책에만 연간 3조5,000억엔(약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부모의 실질적인 육아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늘린 것임
 - 그동안은 2세까지 월 1만5,000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 월 1만 엔(약 1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5,000엔)씩을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해 지급했으며, 연간 수입이 1,200만엔 이상인 고소득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었음
 - 이에 새로운 정책을 통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

학생(18세)까지 확대하고 소득 제한을 없앴으며, 셋째 아이부터는 기존 기준을 변경하여 태어나서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2024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고 계획함
-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 일시금’은 42만엔(약 410만원)에서 50만엔(약 490만원)으로 인상함
-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등 저출생 정책에서 정부의 공적 영역 책임을 강화했음
 - 2026년부터는 출산 비용도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
 - 정부 지원금이 오르면 병원도 출산 비용을 올려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이 마음대로 비용을 올릴 수 없게 되었음
-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음
 -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며, 자유롭게 공공의 육아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됐음
- 여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돌봄 정책에 집중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음
 - 부모의 육아휴직 수당은 7년도부터 휴업 전 급여와 동일하게 실질 100%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을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 취업 급여’를 도입함

-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2025년에 50%, 2030년에는 85%로 높였으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기존에 일본은 2025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3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1년 사용률이 13.97%에 그쳤고, 이마저도 사용기간이 1일에서 2주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음
 - 3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직원은 온라인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육아시간을 확대하고, 잔업 면제제도 대상의 기준을 완화할 계획임
- 특징적인 정책으로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공공시설에 입장할 때 줄을 서지 않고 우선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을 제고를 유도하는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과 민간 영역으로도 제도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전 면허 및 여권 신청 과정에서 우선 창구를 설치하는 사례 존재함
 -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 및 육아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연관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구조적으로 아동, 출산 등의 문제를 총괄하여 다루는 ‘어린이가정청’이 2023년 4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찰청 등의 소관이었던 아동을 둘러싼 행정 사무를 총괄 집약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육아돌봄 지원, 아동학대 방지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음

(2) 프랑스의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 프랑스는 저출생 현상에 위기의식을 느껴 1980년대부터 양질의 육아돌봄 서비스, 출산휴가, 수당 제도 등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추진해왔음
 -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인 것에 비해 프랑스는 1.8명으로 준수한 결과를 보임
- 프랑스 육아돌봄 정책의 핵심은 가족수당에 의한 출산 장려 및 육아돌봄 강화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임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 주택 수당, 가족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임신부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보건센터(PMI) 운영 중임
 - 임신 기간에 의료비와 출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신생아 수당도 지급하는데, 구체적으로 3세가 될 때까지는 1명당 월 142유로(약 20만원)을 지원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함
 - 일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연장 아동수당의 개념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일·생활 균형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음
 - 낮 동안 돌봄서비스 또는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비용을 낮추고 방과 후와 방학 기간에도 보육 시스템을 갖춰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했음
 - 3세 이전까지의 보육 시설 사용이 무료이며, 3~5세 아동의 경우에도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 공립 유치원 등을 통해 무상 교육을 활성화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했음

- 프랑스의 여성 고용률은 유럽 내에서 가장 높으며, 25~49세 여성 취업률 또한 80%에 달함
 - 여성의 임금 수준도 남성의 80% 정도에 달하여 남성과의 상대적 임금 격차가 적기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음
- 출산과 관련한 프랑스의 저출생 정책은 특정 대상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 국립가족수당금고(CNAF)를 통해 가족 부문만을 전담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 출산준비 비용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여 일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음
 -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족 정책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육아돌봄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이 외에도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육아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결혼 후에 낳은 아이와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동등한 혜택을 제공함
 - 결혼이 아니더라도 생활 동반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1999년에 도입하여 가족 선택 권리를 보장했음
 - 프랑스의 비혼 출산의 비율은 1998년에 41.7%에서 2012년에는 56.7%로, 2021년에는 63.5%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음

(3) 독일의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

- 독일은 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음
 - 정부는 가족수당, 부모수당, 교육지원급여, 자녀 세금공제, 보육 시설에 대해 지원하며 육아돌봄 세제 혜택에 집중함
 - 연방주는 가족 교육, 일가정 양립 정책, 가족 휴가 장려, 가족 친화적 주택 공급, 다자녀 가족 지원, 가족상담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어린이 건강검진,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육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00년대 초반에 독일도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며 저출생 위기 현상을 겪었지만, 육아휴직급여 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 제도 도입 후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 부모수당으로 지원하는 급여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제공되며, 기본부모수당(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전 목적), 부모수당 플러스(수급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수급 소요 기간 2배 연장 가능), 파트너십 보너스(휴직 기간 동안 부모 모두 시간제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 소요 기간 4개월 연장 지급)으로 구분함
- 육아돌봄이 강화되는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했음
 - 육아휴직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정책을 세분화했으며, 가족 중심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음

V. 결론

- 한국은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서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대구광역시에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1.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

<표 5.1>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

구분	조례 및 정책	주요 내용
조례 제정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	[제정]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지원사업,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마련 등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여성리더 교류, 예산 지원, 포상 등
정책 제언	수당 지원 등 적용대상 기준 완화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기준 구분 완화·철폐 (적용대상 및 소득 수준 등)
	비정규직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의 육아휴직 지원	[운영] 육아기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공공시설 이용한 야간 돌봄 활성화	[운영] 도서관 등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공공시설 활용해 육아돌봄 지원 강화
	새일센터 우수사례 공유 활성화	[운영] 광역·지역, 공공 부문과 연계해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적용

-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 지원 등 육아돌봄에 의한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바라는 육아 지원 정책 1순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2%,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 21.7%, 육아휴직제도 정착 14.8%로 큰 비중을 차지했음

<그림 5.1>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돌봄 지원 정책(1순위)



-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2021)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해 각종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에서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국적인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시도해 볼 만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에서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기준을 폐지했는데, 이후 정부에서도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수당 지원 등 정책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확대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적용하는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대구광역시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검토해볼 수 있음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 적용대상을 일반가정과 한 부모가정·장애부모가정·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 구분으로 차이를 두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기준까지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입증서류 검토 절차가 없다면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도 있음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8%에 그쳤음
- 자영업자 또한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일본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전 급여의 67%를 지급했는데, 이 같은 혜택이 정규직에만 집중된 것을 개선하고자 시간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수당 등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기간급여 지급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아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사례가 될 수 있음

- 2023년 2월에 국회에서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출산전후급여와 육아기간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되었으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소병훈 국회의원 발의)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

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물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예산을 통해 일부 고용보험 미적용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 지원될 뿐임.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사업·노무제공의 중단 및 소득의 감소는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볼 때, 농어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안 제69조의9·제77조의4 및 제77조의9 신설 등)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 의견 내용 중 일부 >

합계출산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여성 자영업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부담을 덜어 보다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현행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 소득이 중단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2년 결산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해당됨) 집행액은 3,019억원 수준이고, 육아휴직급여(예술인·노무제공자는 제외됨) 집행액은 1조 6,614억 수준으로, 자영업자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신설한다면 필요한 재정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8~2022년 동안 감소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일 것임
 - 서울시와 세종시, 광주시,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 중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도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

-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경력단절 예방 전담팀 신규 지정 및 특화된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지역산업·직종·고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력단절 예방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여성리더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해볼 수 있음

- 안전한 보육시설 확충과 부모의 육아돌봄 편의성 증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내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야간 돌봄을 활성화한다면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증가하는 육아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을 활용해 공동 육아시설을 설치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육아돌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부산시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은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돌봄 정책과 연계가 가능함

- 새일센터의 우수사례 공유를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이와 같은 정책 제언과 함께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함

<표 5.2> 대구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①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근로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대구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 5.3> 대구광역시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리더”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생 또는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지도·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과 민간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4.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구광역시 여성리더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아성찰, 윤리 의식 함양, 소통 전략 등 여성리더 인성 교육
2. 소그룹 연구 활동, 강연 및 토론 등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 확대
4.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및 구축
5.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여성리더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여성리더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여성리더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사회 의식 변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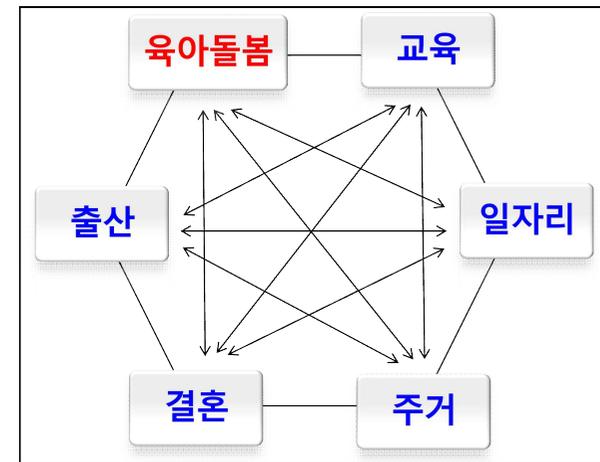
□ 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한국의 인구위기는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비우호적인 육아돌봄 및 근로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음

○ 생애 초기에 부모의 육아돌봄이 향후 영아의 사회관계 형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모의 직접적인 육아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여성을 포함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출산→ 육아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결혼’으로 이어지는 일정한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나, 각 개별 요소 간에 상호 작용하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함

○ 결혼·출산·육아돌봄·교육·일자리 등 개별 요소 간 상호 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전 생애주기에 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5.2> 육아돌봄 등 개별 요소 간 상호 작용



-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또한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육아돌봄의 어려움이 원인인 것과 동시에 출산 이후 기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회 전반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아돌봄이 부담되기에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가 우려되어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존재하기도 함
- 이러한 사회 전반의 현실을 감안한 사회 의식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여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돌봄 및 여성경력단절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정부뿐 아니라 대구광역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실질적인 역할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참고 문헌

- 김혜진, 정종우(202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여성 및 고령자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pp. 85-115.
- 대구광역시(2023). “2023 시정현황”
- 박정현(2021). “대구지역의 여성경력단절에 관한 고찰”,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pp. 5-26.
- 서울시 보도자료(2023), “오세훈표 엄마야빠 행복 프로젝트 1년 227만 명 혜택, 성과 기반으로 2.0 추진”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여성경력단절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3).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23). “「제3차 여성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2023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23).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 정성미(2023).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고용 확대 방안”, 월간노동리뷰, pp. 42-60.
- 통계청(2022).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 통계청(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통계청 보도자료(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청 보도자료(2023).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 “돌봄 경제 활성화 방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3),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 허민숙(2021),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23호.

웹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
- 대구아동돌봄
<https://www.daegu.go.kr/adongdolbom>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
-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https://saeil.mogef.go.kr>
- 인천 계양구 임신·출산·육아 정보포털 ‘아이조아계양’ 운영
https://www.gyeyang.go.kr/open_content/childbirth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

언론 기사

- 경향신문, 「경기도, 일과 생활 균형 고민…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 2023년 3월 29일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03291315001>
- 뉴스1, 「다함께돌봄센터 초등생 점심 제공 검토…경기도, 인구특위위서 논의」, 2023년 9월 18일
<https://www.news1.kr/articles/5175232>
- 뉴스1,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유아동반 가족석’ 조성… ‘엄마아빠 VIP존」, 2023년 9월 15일
<https://www.news1.kr/articles/5172246>
- 뉴시스, 「난임 시술비, 내년부터 소득기준 없이 전국서 지원」, 2023년 10월 17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17_0002485277
- 뉴시스, 「여가부, 새일센터 통한 ‘경력단절 극복’ 우수사례 공모」, 2023년 9월 17일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915_0002451383
- 뉴시스, 「인구주간 8~14일, 경기도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023년 7월 6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6_0002365909
- 대구신문, 「경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호남 세미나 참석」, 2023년 5월 24일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425>
- 대구신문, 「대구시, 9월 1일~2일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 개최 . . . 350여명 채용 기회, 82개 업체 참여」, 2023년 8월 29일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14>

- 대구신문, 「대구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7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2023년 9월 17일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309170012>
- 동아일보,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30만 원→200만 원으로」, 2023년 2월 7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06/117756864/1>
- 머니투데이, 「日기시다 “애 낳으면 주택 우선공급 30만호…아동수당 대상·기간 확대”」, 2023년 6월 13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319443586906>
- 문화저널21, 「독일의 인구정책, 독일의 출산율 반등 해법은 ‘지원’」, 2023년 7월 10일
<https://www.mhj21.com/156080>
- 매일신문, 「경북개발공사-여성정책개발원 ‘여성리더 발굴’ 협약」, 2023년 7월 2일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70210341316403>
- 부산일보, 「야간에 초등아이 맡길 ‘구포돌봄센터’ 문 연다」, 2023년 9월 14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91414500496299>
- 서울신문, 「난임 시술당 최대 170만원… 대구, 출산 지원 정책 올인」, 2023년 7월 31일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01009011>
- 아시아경제, 「“돈 없으면 줄 서“ 한국…“아이는 프리패스“ 일본」, 2023년 4월 21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2114101700744>
- 여성신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2개, 전국으로 확산 중」, 2023년 2월 17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72>

- 연합뉴스, 「임신·출산·육아 정보 한눈에…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오픈」, 2023년 8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830059500004>
- 조선일보, 「日, 출산율 높이기 총력...비정규직·자영업자도 육아휴직 재정지원」, 2023년 3월 31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3/03/30/ES5MIA6RUNETZPVVHENVPCR6FU>
- 전남일보, 「전남여성가족재단, 나주서 새일센터 우수사례 공유」, 2023년 11월 2일
<http://www.jnilbo.com/71864096249>
- 제주뉴스, 「저출산 문제 해결한 프랑스는? 출산과 양육 부담 줄여주는 정책 펼쳐 성공」, 2020년 12월 13일
<http://www.jejunews.biz/news/articleView.html?idxno=52072>
- 충청매일, 「세종시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전국서 가장 높아」, 2020년 11월 5일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046>
- 한국경제, 「佛, 아이 많을수록 소득세 더 깎아줘」, 2023년 8월 31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83154351>

주 의

1.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반드시 대구광역시의회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